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Q&A

검사

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는 대상

-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 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,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사환자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조사대상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유증상자	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	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주요 임상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	

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

-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
-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음
-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

검사 가능한 곳 확인

○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

○ 아래 링크 검사 가능한 선별 진료소 확인 가능

전국선별진료소 링크

→ 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pup_200128.html

(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→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→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)

○ 자세한 문의사항은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와 상의

- 제주도 선별 진료소(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→ 코로나19 현황

제주시: 제주대학교병원, 제주한라병원, 한마음병원, 한국병원, 중앙병원

서귀포시: 서귀포의료원, 서귀포열린병원

검사 채취 방법

- 검체 채취: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(의사의 지도하에 시행)
- 지정된 장소(선별진료소 등)에서 총 2가지 검체 채취

상기도 검체	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(1개 튜브) - (비인두도말)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- (구인두도말)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
하기도 검체	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-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

- 유전자 검사
 -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함

의사 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다른점

- 의사환자: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(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)
 - 선별진료소(의료기관 또는 보건소)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
- 조사 대상 유증상자:
 -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되는 자
 -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-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
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 음압실의 필요 여부

○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,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.

민간 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비

- 의사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*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다만 일반진찰, X-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
* 의사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하는 경우

유전자검사 소요시간

- 유전자검사 소요 시간 : 6시간 정도 →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고려, 검사 후 1~2일 이내에 결과 확인 가능

의사 환자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조사 대상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유증 상자	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주요 임상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	

검체채취 시 표준주의

-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,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
- 환자의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,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,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, 비말주의(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, 공기주의가 있음)
- 출처 : 질병관리본부.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(2017)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→ 알림 · 자료 → 지침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**대응 지침서 9-2판 Q&A 게시판
(2020.8.20.)**